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변경·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1.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지구단위계획(산업·유통형)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 : 백구 산업·유통형 개발진흥지구)으로 결정(변경)하여 이를 고시하고, 동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김 제 시 장

2012년 9월 14일

I. 김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변경·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

1. 위 치 :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220-1번지 일원
2. 용도지역·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-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계획관리지역
 - 나. 개발진흥지구 결정(변경) 조서 :

구분	지구명	지구의세분	제한내용	면적 (㎡)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백구개발 진흥지구	산업·유통형	지구단위계획에 따름	122,405	전라북도고시 제93-108호 (1993.4.2)	

3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백구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	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220-1번지 일원	122,405	-	122,405	

4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 :

가.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면 적 (m ²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122,405	100.0	
공 업 용 지	109,940	89.82	
공 공 시 설 용 지	12,465	10.18	

나.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가구 번호	면적 (m ²)	획 지		비 고
		위치	면적(m ²)	
I	62,012	①	6,651	한신평장
		②	17,892	한국코카콜라보틀링(주)
		③	11,369	홍건정공(주)
		④	6,648	한신평장
		⑤	6,439	대한유리공업(주)
		⑥	6,433	(주)태림
		⑦	6,580	황성공업(주)
II	47,928	①	22,457	(주)동성정공
		②	2,639	(주)현대협동
		③	11,058	대한유리공업(주)
		④	11,774	(주)신우
	109,904		109,904	

다. 건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

1) 건축물에 대한 용도계획 : 변경없음

위 치	구 분	비 고	
I 의 ①내지⑦ II 의 ①내지④	건축물용도	지정용도	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공장의 범위)에 의한 공장
		불허용도	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
2)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·용적률 계획

가) 건물의 건폐율 계획 : 건폐율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『김제시 도시계획조례』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부지에 대한 건축면적에 따른다

나) 건물의 용적률 계획

위 치		용적률(%)		시설부지 면적(m ²)	건축연면적(m ²)			비 고
가구 번호	획지 번호	기정	변경		기정	변경	증·감	
I	①	57.74	57.74	6,651	3,840.00	3,840.00	-	한신평장
	②	41.30	41.30	17,892	7,388.80	7,388.80	-	한국코카콜라 보틀링(주)
	③	56.26	56.26	11,369	6,396.62	6,396.62	-	흥건설공(주)
	④	51.59	56.73	6,648	3,430.00	3,771.29	(증)341.29	한신평장
	⑤	45.73	45.73	6,439	2,944.50	2,944.50	-	대한유리공업(주)
	⑥	58.64	58.64	6,433	3,772.00	3,772.00	-	(주)태림
	⑦	66.57	66.57	6,580	4,380.00	4,380.00	-	황성공업(주)
II	①	27.59	27.59	22,457	6,194.70	6,194.70	-	(주)동성정공
	②	20.08	20.08	2,639	530.00	530.00	-	(주)현대협동
	③	47.54	47.54	11,058	5,256.90	5,256.90	-	대한유리공업(주)
	④	37.78	37.78	11,774	3,326.00	3,326.00	-	(주)신우
총 계				109,940	47,459.52	47,800.81	(증)341.29	

3) 건물의 높이 계획 :

건축물의 높이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3조 승인내용에 따른다.

4) 건물의 배치계획 :

건물의 배치는 건축물 배치계획도에 따른다.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변경·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: 실음생략. 끝.